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노숙인 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1년 연장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2. 03. 22
개정 '23. 03. 22
개정 '24. 03. 22

제3조(유효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3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